

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(案)

議案 審號	483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 : 1994. 10.

提出者 ;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一般 勤勞者의 便益增進 및 福祉施設로 建立한 “勞動綜合福祉館” 이 勞動運動을 하는 少數 特定對象者를 指稱하는 施設로 誤解될 우려가 있어 이보다는 具體的이고 包括的인 뜻을 지닌 “勤勞者綜合福祉館”으로 名稱을 改稱하여 모든 勤勞者들이 實費負擔으로 사랑방과 같이 利用할 수 있는 教育·文化·機能教育場으로 活用코자 함

2. 主要骨子

가. 題名중 勞動綜合福祉館을 勤勞者綜合福祉館으로 함

나. 勞動綜合福祉館長을 勤勞者綜合福祉館長으로 함(案 第4條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노동” 을 “근로자” 로 한다.

제 1조중 “노동” 을 “근로자” 로 한다.

제 4조 제 1항중 “노동” 을 “근로자” 로 한다.

[별 표] 제명중 “노동” 을 “근로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대전직할시 <u>노동</u> 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	대전직할시 <u>근로자</u> 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----- --대전직할시 <u>노동</u> 종합복지관--	제1조(목적) 이조례는 ----- --대전직할시 <u>근로자</u> 종합복지관--
제4조(관장) ①복지관에 <u>노동</u> 종합 복지관장(이하 “관장” 이라한 다)을 두며, -----	제4조(관장) ①복지관에 <u>근로자</u> 종 합복지관장(이하 “관장” 이라한 다)을 두며, -----
[별 표] <u>노동</u> 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	[별 표] <u>근로자</u> 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